
충청남도교육청 -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단체협약서

2017. 12. 4.

충청남도교육청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차 례〉

전 문	1
제1장 총 칙	1
제2장 조합활동	2
제3장 단체교섭	6
제4장 노동쟁의	8
제5장 고용보장	9 <i>(제5장 고용보장)</i>
제6장 인 사	9
제7장 근로시간·휴일·휴가	12
제8장 임 금	15
제9장 모성보호 및 성평등	17
제10장 산업안전 보건	19
제11장 복리후생	19
제12장 노사협의회	20
제13장 조합원인권 등	20
부 칙	21

전 문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조정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 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하여 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적용범위】 ① 본 단체협약은 충청남도 교육감소속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호봉제 근로자로서, 조합을 비롯한 교육청과의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 및 호봉제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공무원이 아닌 호봉제근로자는 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준용 받는 구 학부모회 직원 또는 구 육성회 직원(이하 ‘호봉제근로자’라고 한다)을 말한다.

제2조 【기본원칙 준수】 교육청은 헌법상 기본권을 근거로 제정된 노동관계법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소속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학교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협약의 적용】 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본청 및 각급기관의 취업규칙, 제 규정,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한다.

② 교육청은 본 협약체결과 동시에 확정된 협약이 개별 학교현장에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확보·협약 홍보 및 안내 활동 등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근로자 지위의 유지】 교육청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중앙 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아니 되며, 그때까지는 정당한 조합 활동을 위한 각 학교 내 출입과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

제5조 【기존의 근로조건 저하금지】 교육청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6조 【규정의 제정과 개정】 교육청은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 및 조합원에 관련된 조례 및 제 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 【취업규칙】 ① 교육청은 조합원의 취업규칙은 다른 교육공무직과 별도로 작성하며, 조합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② 교육청은 조합원의 정원을 다른 교육공무직원과 별도로 책정, 관리 한다.



제2장 조합활동

제8조 【노조활동의 보장】 ① 교육청은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하지 아니 한다.

② 조합활동 과정에서 질병 · 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한다.

③ 교육청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유급으로 인정하며 조합은 참가자 명단을 교육청에게 3일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2. 대의원대회(연2회)
3. 운영위원회(연10회)
4. 정기총회(1일)
5. 확대간부수련회(1박2일 1회)
6. 임시총회(연2일, 단, 조합이 통지한 일자)

제9조 【노조홍보 활동보장】 ① 교육청은 조합의 정당한 학교 내 홍보활동을 보장한

다.

- ② 조합은 각 학교장과 협의한 장소에 조합 전용 게시판을 설치 및 사내 방송과 통신망 이용, 인쇄물 게시·배포 등을 할 수 있다. 단, 각급학교에 공용게시판이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야한다.
- ③ 교육청은 정당한 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물 배포와 부착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없다.
- ④ 교육청은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조합원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 할 수 있는 곳에 공개적으로 비치한다.
- ⑤ 교육청은 조합이 요구하는 경우 교육청과 직속기관이 운영하는 기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조합 홈페이지를 연결한다.



제10조 【편의제공】 ① 교육청은 조합의 각종 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요청 시 당해 기관 및 학교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당해 기관장이 사용허가하도록 적극 협조한다.

- ② 교육청은 조합이 문서를 발송할 경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 【조합비 일괄공제】 교육청은 조합이 요청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급여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조합이 제시한 통장으로 조합에 인도한다. 단, 조합은 신규가입 또는 탈퇴 등으로 조합원 명단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급여지급일 기준 10일전까지 조합원 근무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 【자료제공 등】** ① 교육청은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비롯한 제 규정, 규칙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교육청은 조합이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시 자료를 제공하고 열람. 복사를 협조하며, 기타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공개에 협조한다.

제13조 【통지의무】 교육청과 노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상호문서로 통지한다.

1. 교육청이 통지할 사항

- 가. 취업규칙 및 구 육성회직(호봉제회계직) 관련 제규정의 변경
- 나. 호봉제근로자 관련 조직 및 직제 개편 결과
- 다. 교육청 등에서 각급 기관으로 보낸 공문 중 노동조합 및 조합원과 관련된 내용
- 라. 단체협약 이행 관련사항
- 마. 조합원의 전보·인사 발령사항

2. 노동조합이 통지할 사항

- 가. 규약의 변경
- 나. 조합임원 명단 및 근로시간면제자의 보직임면에 관한 사항
- 다. 조합의 상급단체 가입 및 변경사항
- 라. 기타 노사가 합의한 사항



제14조 【조합원의 공민권 보장】 ① 교육청은 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② 조합원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직 선거에 출마를 위해 휴직을 신청한 경우 선거일 1개월 전 휴직을 인정하고 낙선한 경우 10일 이내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이 공직에 취임한 경우 임기동안 휴직을 인정한다.

④ 위 ②항 및 ③항의 경우 무급으로 한다.

제15조 【조합원의 투표권 보장】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도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조합원에게는 선거 당일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당일 오전11시 출근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 【조합사무실】 교육청은 조합의 의견을 들어 조합 사무실로 적합한 건물 또는 그 일부를 조합 전용 사무실로 대여, 조합이 관리케 하며, 조합 전용 사무실에 따른 필요한 시설 (책상, 의자, 전기시설, 통신시설 등)을 제공한다.

제17조 【근로시간면제자 및 쳐우】 ①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충공호지회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로시간면제자 사용인원은 풀타임인원 2명으로 하고, 총 사용시

간은 연간 4,000시간을 한도로 한다.

- ② 연간근로시간 2,000시간을 풀타임근로 시간면제자 1명으로 산정한다.
- ③ 근로시간면제자 산정기준 조합원수는 단체협약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단체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④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30일전에 그 명단을 교육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교육청은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의 전임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전임기간 동안 어떤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 ⑥ 교육청은 근로시간면제자의 해제 시 원직복귀를 원칙으로 하되, 원직이 소멸 된 때는 본인과 성실히 협의하여 원직과 대등한직에 복귀 시킨다.
- ⑦ 교육청은 근로시간면제자의 전임기간 동안은 인사고과에서 제외하며 인사고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⑧ 교육청은 근로시간면제자가 전임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지급하고 전임으로 임금을 저하하지 아니한다.
- ⑨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 수행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다.

제18조 【조합원 교육시간】 ① 교육청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본청 및 각 급기관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반기별로 8시간씩 부여하며, 교육시간은 분할하여 사용 할 수 있으며, 당 시간은 유급으로 한다.

- ② 조합은 교육 10일 전에 교육일정을 정하여 교육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교육청은 교육일정 통보받는 즉시 늦어도 1주일 이전에 개별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야 하며, 개별 학교는 조합원에 대하여 교육시간의 참석을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부당노동행위예방】 ① 교육청은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하여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교장단 연수과정에 노동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관련 과목의 개설·운용에 있어 조합을 대등한 동반자

관계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3장 단체교섭

제20조 【단체교섭 요구 및 단체교섭 의무】 ① 조합은 교섭 일시, 장소, 안건, 교섭 위원 명단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써 단체교섭을 요구한다.
② 교육청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교육청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하고자 할 때는 2일전 연기사유와 함께 연기일시를 명시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단, 5일 이상 연기 할 수 없으며 국정감사 및 도의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정조정은 간사협의회 등으로 결정하고 그 횟수는 2회로 제한한다.

제21조 【단체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3. 임금, 노동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4. 남녀평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5. 노동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6.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7. 노동 강도에 관한 사항
8.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9. 기타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

제22조 【단체교섭위원】 ① 교섭위원은 노사 동수로 각 10명이내로 구성하며, 쌍방의 대표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② 회의의 의장은 대표위원이 교대로 한다.
③ 쌍방의 대표교섭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할 때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결정권을 부여해야 하며,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④ 단체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실무교섭을 할 수 있다.
- ⑤ 교섭 당일 교섭위원은 공가처리 한다.
- ⑥ 노사 쌍방은 각각 간사, 서기 약간 명을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 준비, 교섭진행 사항 기록, 교섭 후 사후 조치 등을 취하게 하고, 관련활동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 ⑦ 교육청은 1항에 따라 조합 측으로부터 통보받은 교섭위원에 대하여 교섭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각 학교로 참가협조 공문을 최소 2일전까지 보낸다.

제23조【교섭공개】 ① 모든 교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상호합의하에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참관인은 노사양측이 상호 합의하여 둘 수 있으며 교섭대표위원의 합의하에 발언 할 수 있고 교섭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섭대표위원은 퇴실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제24조【단체교섭 자료제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관련자료 및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교육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제출하도록 노력한다.

제25조【회의록 작성 · 보관】 ① 노사 양쪽은 교섭회의록을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회의 종료 시 합의된 내용을 작성하여 노사 교섭위원 서명 날인 후 노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회의 종료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간사단 정리를 통해 다음 차 회의에서 서명 날인한다.

③ 단체교섭 과정의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섭과정을 녹취,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는 것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한다.

제26조【합의서 작성】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양측의 교섭대표위원이 서명한다.

제27조【단체협약 이행】 ① 교육청은 단체협약 이행계획서 초안을 단체협약 체결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한 뒤, 조합과 의견 조율을 거쳐 중·고등학교에 배부한다.

② 조합에서 미 이행 사례를 제시할 경우 교육청은 이를 확인하고, 이행 상황 결과

에 따라 미 이행 학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지도한다.

③ 학교장 등의 연수 시 단체협약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④ 교육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 부장 등 개별학교현장에서 단체협약의 이행의무가 있는 자가 단체협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음을 지도한다.

제4장 노동쟁의

제28조【노동 쟁의의 원칙】 ①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 중 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교육청은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청은 정당한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간부를 이간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적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29조【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① 교육청은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 교육청은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제30조【쟁의기간중 시설이용 등】 교육청은 쟁의행위 중 조합원의 정상적인 일상 활동을 유지케 하기 위하여 각 학교 내 각종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지 못한다. 단, 학생들의 수업활동 및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손해배상】 교육청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다만,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5장 고용보장

제32조 【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만 60세로 하며, 만 60세가 도래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33조 【교육훈련】 ① 교육청은 조합원에 대하여 업무에 대한 설명과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교육청은 호봉제노동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교육청은 새로운 기술 또는 교과과정 개편 등 직무전문성 교육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④ 공무원과 동일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한다.

제34조 【장애인 고용】 ① 교육청은 취업 중 산업재해로 장애인이된 사람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본인이 원하면 치료 후 동일직종으로 계속 근무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고령자 고용】 교육청은 고령자의 직업능력계발·향상과 작업시설·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인사

- 제36조 【인사원칙】** ① 인사는 단위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안정적 운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 제37조 【인사위원회】** ① 각급기관은 조합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징계

2. 해고

- ② 위 제1항 심의·의결할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

1.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위원 30%

2. 변호사, 노무사, 대학교수등 인사노무관리에 전문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자 30%

- ③ 위원회는 소속 기관(부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이 경우 개최 1주일 전에 조합 및 조합원에게 참석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해고의 경우 재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 ⑤ 교육청은 인사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회의록 및 회의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한다.

- 제38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2. 감급

3. 정직

4. 해고

- 제39조 【인사 평가】** ① 교육청은 인사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이 요청하는 경우 평가결과의 모든 내용을 공개 하여야 한다.

② 교육청은 조합원의 인사평가에 있어 인사제도의 확립을 위해 평가제도 개편 시 사전에 노동조합 의견을 수렴한다.

제40조【근로 계약 및 채용】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시행 전에 고용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이 조례에 따라 고용된 것으로 본다.

제41조【전임경력 및 호봉인정】 ① 조합원의 호봉상한선을 폐지하고 과거의 근무 경력이 호봉에 반영되지 않고 누락된 경우와 전임경력을 포함하여 재산정 한다.
② 전임경력 재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노동조합과 교육청이 별도로 협의하여 적용한다.



제42조【휴직사유와 기간】 ① 교육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을 허가해야한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한 육아휴직
2. [병역법], [전시근로동원법], 기타법령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기간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업무상부상, 질병으로 근무를 계속 할 수 없을 때 공단에서 정한요양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족돌봄휴직
5. 업무외부상 또는 질병으로 60일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여 진단서를 제출한 때(질병휴직): 1년이내의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의 휴직기간
②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휴직 만료 10일전까지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휴직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43조【휴직자 처우】 ① 휴직종료 후 복직하였을 때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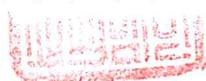
② 휴직중사망자, 퇴직자의 평균임금 계산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업무상 산재로 인한 최초 1년의 기간 동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수와 월 평균임금과의 차액을 보전하여 지급한다.

제44조【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30일전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일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교육청이 휴직자에게 복직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고용관계는 자동 종료된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 교육청은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원직의 소멸로 원직 복직이 어려울 때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원직과 대등 또는 유사한 직에 복직시킨다.

③ 복직원이 제출되었을 때 복직사유가 명백하면 7일 이내에 복직시킨다.



제45조【부당해고의 구제】 징계처분 등을 받은 조합원이 노동위원회의 심판 및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의 ‘확정 판정’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 등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며, 교육청은 원상회복의무의 일환으로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판정서 또는 결정서가 교육청에 송달된 날로부터 징계 처분 등을 중지하며, 해고의 경우 원직에 복직 시킨다.
2.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였더라면 받았을 임금을 소급 지급한다.
3. 그 밖에 부당 징계 등으로 인한 모든 인사상 불이익을 부당징계 등이 없었던 상태로 원상회복한다.

제7장 근로시간·휴일·휴가

제46조【근로 시간】 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근무자의 경우 출퇴근시간을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사용자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중 조합원에게 참석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제47조【유급휴일】 다음 각 호는 유급 휴일로 한다.

1. 주휴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따른 공휴일
3. 노동절(5월1일)

제48조【연차 유급휴가】 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한다.

②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 연차휴가일수 산정기간은 1월1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중도 채 용된 자는 채용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③ 연차휴가는 1년에 한하여 자유로이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결근시는 연 차휴가로 자동 대체한다.

④ 교육청은 조합원이 청구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사용자측 형편에 맞추어 특정한 날짜에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 에 휴가를 주는 것이 기관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⑤ 교육청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 을 기준으로 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시점의 첫 달 임금지급일에 수당을 지급한다.

제49조【특별휴가】 교육청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경조사 등에 해당할 시 소정 의 특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 동 휴가 기간 중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일을 추가로 부여한다.

1. 경조사휴가

- 가. 본인결혼: 5일
- 나. 자녀결혼: 1일
- 다. 배우자 출산: 5일
- 라. 자녀 입양: 20일
- 마.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 바.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사망: 3일
- 사.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3일

- 아.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1일
 - 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1일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조합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차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유급)를 얻을 수 있다.
 3.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조합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4. 병역법에 따라 조합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5. 자녀가 있는 조합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6. 각급 학교 근무 조합원은 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하여 연간 3일 이내에서 학습 휴가를 부여한다.
 7.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복무조례의 특별휴가 변동사항 발생 시 그에 따른다.

제50조 【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유급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침·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을 병가1일로 계산하고, 병가중 연간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서 제외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조합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② 전항의 병가사용이 7일 이상일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1조【공가】 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는 유급으로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9. 조합의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노사협의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10.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복무조례의 공가에 대한 변동사항 발생 시 그에 따른다.

제52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연차유급휴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등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53조【출장】 조합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54조【업무분장】 각 학교는 조합원의 업무분장을 변경할 경우에 사전에 해당 조합원과 성실히 협의한다.

제8장 임 금

제55조【임금의지급기준】 임금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하여 별도함의 내용과 같이 지급한다.

제56조【임금지급일】 교육청은 매월 17일에 임금을 통화로 전액 본인에게 지급한다.

1.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2. 계약일이 17일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일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지급한다.

제57조【임금의 임의공제 금지】 교육청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임금에서 공제 할 수 없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3. 조합비
4. 기타 노사 합의로 공제키로 결정한 사항 및 관련 법률에서 공제를 명시하거나, 노동조합이 특정 사항에 대한 공제에 명시적으로 조합원 동의한 경우

제58조【휴업수당】 교육청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퇴직금】 ① 교육청은 조합원의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과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근속년수는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지 않으며(단, 육아휴직, 노조전임휴직기간, 산재기간 등 법령이 인정하는 기간제외), 타학교 전출, 형식적 퇴사재입사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교육청은 조합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장 모성보호 및 성평등

제60조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교육청은 헌법의 평등이념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용과 모든 근로조건에서 특정성을 이유로 직·간접적인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고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여야하며 차별을 인정받았을 경우 즉시 원상회복 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한다.

제61조 【직장내 성희롱 예방 등】 ① 교육청은 직장내 성폭력, 폭언·폭행 등의 행위와 원하지 않는 성적의미가 포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표현이나 표현물에 의한 각종형태의 성희롱 및 폭언·폭행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직장 내 성폭력, 폭언·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청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청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호봉제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 【보건휴가 및 태아검진시간 혜용 등】 ① 교육청은 여성조합원이 신청할 경우 월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한다.

② 교육청은 임신한 여성조합원이 모자보건법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는 1주마다 1회 이를 혜용하여야 하며, 위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조합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청은 임신 중인 조합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하는 경우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여야하며 위 모성보호시간을 이유로 그 조합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 제63조 【출산전후 휴가】 ① 교육청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출산전후 휴가와 관련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4조 【유산, 사산휴가】 교육청은 임신 중인 여성 조합원이 유산 또는 사산으로 보호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관련 법률에 따른 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사산한 날로부터 5일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사산한 날로부터 10일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사산한 날로부터 30일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사산한 날로부터 60일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사산한 날로부터 90일

제65조 【직장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66조 【육아휴직】 ① 교육청은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인 조합원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조합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며 분할 신청할 수 있다.

- ②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 ③ 육아휴직 기간은 호봉승급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④ 육아휴직급여 및 기타 육아휴직과 관련한 내용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동관계 법률에 따른다.

제67조 【수유시간】 ① 교육청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조합원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교육청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유에 필요한 수유실 또는 전용 휴게실과 기타 보관 시설 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0장 산업안전보건

제68조 【사업주의 재해예방의무】 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제11장 복리후생

제69조 【복리후생의 원칙】 ① 교육청은 각종 복지시설이용에 있어 성별, 고용형태 별 차별 없이 사업장내 모든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적용한다.

② 교육청은 조합원들이 공무원들에게 부여되는 연수원·콘도사용 등의 복리후생 시설사용이 조합원 및 그 가족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70조 【교육연수 등】 ① 교육청은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하며, 연수경비는 교육청이 부담한다.

② 교육청이 주관하는 직무연수의 경우 조합원의 연수 경비 및 연수 여비는 소속 근무기관에서 지급한다.

③ 교육청은 방학 중 필요시 연수를 실시하여 자기계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한다.

④ 교육청은 사이버 교육 등의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⑤ 교육청은 조합원의 소속기관이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⑥ 해외연수의 기회를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1조 【편의시설】 각 학교는 재정 및 시설여건의 범위 내에서 적정넓이의 휴게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한다.

제72조 【동아리(소모임) 활동 보장】 ① 교육청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동아리(소모임) 활동을 적극 보장한다.

② 동아리(소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은 필요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동아리의 구성원이 대외 행사에 각 학교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12장 노사협의회



제73조 【노사협의회】 교육청은 관계 법령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 한다.

제13장 조합원인권 등

제74조 【교육청의 사회적 책무】 ① 교육청은 조합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고 노동자를 감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노사 쌍방은 충남교육청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 조합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75조 【인권보호】 ① 교육청은 각 학교 내에서 조합원의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청은 조합원에 대하여 부당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학교를 지도하도록 노력한다.

제76조 【차별행위 금지】 교육청은 조합원에 대하여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흔인여부, 신체적 조건, 근로형태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77조【강요에 의한 각서 금지】 ① 교육청은 조합원에게 부당한 각종의 동의서, 서약서 등의 제출을 강요할 수 없다.

② 교육청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내용으로 각서를 받았을 경우 이는 자동 무효로 간주한다.

제78조【사생활 보호】 교육청은 조합원이 사용하는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 내부를 볼 수 있는 감시 장비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79조【학교운영위원회】 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구 육성회직(호봉제회계직) 관련 안건이 상정될 시 당해 학교 조합원이 참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부 칙

제1조【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이 존속된다.

제2조【협약갱신】 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때 본 협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보충협약 및 재교섭】 ① 교육청과 노동조합 쌍방은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체결 및 재교섭을 요구할 수 없으나, 경제적 사회적 요건의 중대한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로 보충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일부 변경 및 보충 협약은 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4조 【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노동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5조 【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거 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며,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6조 【불이행 책임】 교육청과 조합은 본 단체협약 체결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제7조 【개별근로조건인정】 교육청은 이 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보다 상회하는 개별 근로조건은 저하 하지 않는다.

제8조 【경과조치】 제32조(정년)과 관련되는 경과규정으로 2018년 6월말일부터 시행 한다.

2017. 12. 4.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 김지철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위원장

김봉진

2017. 12. 4.

합의 내용

충청남도교육청과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기본급) 조합원의 기본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의 9급 봉급표에 의한다.

제2조(수당) ① 수당과 실비보상 등의 지급은 별표1에 의한다.

② 관리수당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은 당해 연도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운영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지급등급과 인원비율을 정하여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4조(맞춤형복지비) 맞춤형복지비는 2018년에 기본점수 600점, 근속점수 150점으로 인상하고, 가족복지점수는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하며, 2019년에는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제5조(적용) 제1조 내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관련규정 개정으로 변동되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한다.

[별표1]

수당 및 실비보상 지급 구분표

구 분	항 목	비고
수 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추가가산금 포함)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실비보상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포함)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